

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·지도자  
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관리 규정



# 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관리 규정

제정 2021.06.23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선수·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(이하 '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' 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선수 및 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이라 함은 우리 체육회에 등록하여 선수 및 지도자 활동 중 훈련과 경기 중의 상해 및 사망 시 보상을 위한 기금을 말한다.

**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)** ①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은 특별회계로 설치한다.  
②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일반회계의 전입금
2.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익금
3. 기타 성금
4.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필요로 하는 기타 재원

**제4조(기금조성기관)** 기금 조성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여 조성한다.

**제5조(기금의 용도)** ① 기금은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

1. 부산광역시 선수 및 지도자의 훈련 중 상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(위로)
2. 전국체전 및 각종 대회에 출전 중의 상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(위로)
3. 기타 선수, 지도자의 상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(위로)

② 상해 및 사망 보상(위로)금 지급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.

**제6조(기금의 예탁)** ① 조성된 기금은 시중은행에 신탁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조성된 기금은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직명으로 예치한다.

**제7조(기금의 관리운영)** 기금관리 담당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지정하는 회계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**제8조(기금의 지출)** 기금의 지출은 제5조(기금의 용도)의 기준에 따라 사용함을

원칙으로 하며,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의 재가로서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.

**제9조(기금관리상황 보고)**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는 변동이 있을 시 즉시 회장에 게 제반 상황을 보고하고 연말결산 전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기금의 정산)** 기금의 정산은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하고 기금사용 즉시 관련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**제11조(변제)** ① 기금의 사용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기금 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여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 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하며, 명령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변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이행케 한다.

**제12조(기타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 한다.

## 부 칙 (2021.06.23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상해 및 사망 보상(위로)금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지 급 액	내 용
선 수	20,000,000	· 전국체전 부산대표선수로서 훈련 및 각종 대회참가 중 사망하였을 경우
	10,000,000	· 부산시에 소속된 선수로서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 중 사망하였을 경우
	5,000,000	· 전국체전 부산대표선수로서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※ 전국체전 기간 중 가입하는 상해보험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(실비) 지급
지도자	20,000,000	· 전국체전 부산대표 지도자로서 훈련 및 각종 훈련 참가 중 사망하였을 경우
	10,000,000	· 부산시에 소속된 지도자로서 훈련 및 각종 훈련 참가 중 사망하였을 경우
	5,000,000	· 전국체전 부산대표선수로서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※ 전국체전 기간 중 가입하는 상해보험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(실비) 지급